

객과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

2회 (03/19)

01. 다음 중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?

- ①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②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
- ③ 소유자별 지분

④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 번호

⑤ 축척

02. 다음 중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토지의 이동사유
- ②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

③ 대지권비율

④ 소유자별 지분

⑤ 개별공시지가

03. 다음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」에 규정된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으로 올바른 것은?

- ① 토지대장 소유자별 지분, 지목, 면적
- ② 공유지연명부 지목, 면적, 필지별 장번호
- ③ 대지권등록부 전유부분 건물표시, 도면번호, 면적
-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-좌표, 부호, 부호도
- ⑤ 지적도 건축물의 위치, 색인도, 면적

04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이다. 맞는 것은?

- ① 대지권등록부-, 건물의 명칭,건축물의 위치현황
- ② 공유지연명부-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, 소유자별지분
- ③ 지적도 · 임야도-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, 토지의 고유번호
- ④ 토지대장·임야대장-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, 토지소유자별 지분
- ⑤ 경계점좌표등록부-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, 좌표

05.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
- ① 지적소관청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 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 우에는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·면·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③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
- ④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(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· 저장한 경우는 제외함)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• 운영한다.

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2회 (03/19)

06. "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"상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·저장한 경우 관할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 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- ③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·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-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.

07. 다음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이다. 틀린 것은?

- ①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·저장하는 경우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보존한다.
- ②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·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의 장에게 신청한다.
-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,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기록사항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08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·등록 등에 관한 설명이다. () 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?

- ① ()는(은)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·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또 는 좌표 등을 조사·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또는 좌표는 ()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.
- ©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토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(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① ⑦ 지적소관청 ② 권리의 변동 ⓒ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
- ② ① 국토교통부장관 ① 토지의 이동 ②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
- ③ ① 지적소관청 ① 토지의 이동 ©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
- ④ ① 국토교통부장관 © 권리의 변동 ©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
- ⑤ 기 시·도지사 ① 토지의 이동 © 토지이용현황 조사계획

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2회 (03/19)

09. "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"상 분할과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소유권이전,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③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병 할 수 없다.
- 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할 수 없다.

10.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?

- ① 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(承役地)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
- ②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
-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
- ④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
- ⑤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

객관식진도학습 정답

01. ③ 소유자별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.

02. ②

- ① 토지의 이동사유는 토지대장·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.
- ③ 대지권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.
- ④ 소유자별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.
- 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대장·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.

03. 4

- ① 소유자별 지분은 공유지연명부·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.
- ② 지목과면적은 토지대장·임야대장·지적도·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. 필지별 장번호는 지적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.
- ③ 도면번호는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. 면적은 토지 대장·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.
- ⑤ 면적은 토지대장·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.

메기랜드 노량진캠퍼스

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2회 (03/19)

04. ②

- ① 건축물의 위치현황은 지적도·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.
- ③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.
- ④ 소유자별 지분은 공유지연명부·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.
- ⑤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어있는 지역의 지적도의 등록사항이다.
- **05**.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·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06 3

07. ⑤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기록사항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·면·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08. ②

- ③ (국토교통부장관)는(은)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·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·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또는 좌표는 (토지의 이동)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.
- ©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·측량하여 토지의 지번·지목·면적·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(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09. ④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병 할 수 있다.

10. ②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.

- 1호.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,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
- 2호.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
 - 가. 소유권·지상권·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
 - 나, 승역지(承役地)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
 - 다.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(登記原因)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
 - 라.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「부동산등기법」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
- 3호.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